

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지
제60호	제31차	1987.11.19	총재 박성상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1.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이율	구분	이율	
1~9	(생략) (신설)	1~9 10.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현행과 같음) 정기적금최고이율 + 2.0%포인트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정기적금에 대한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0~11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호제하

2. 시행일자 : 1987. 12. 1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

제의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를 신설함에 있어 동 예금에 대한 수신이자율의 최고율을 정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재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의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1 (생 략)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권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권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3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4-6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2 (생 략)